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123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주식회사 I

10. J

11. K

12. L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3. [redacted]시장

4. [redacted]군수

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7. [redacted]시장

8. [redacted]

9. [redacted]

10.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구합6244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7.

판 결 선 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가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6조는 취득세율의 적용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시취득의 범위를 '기존에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개정 지방세법의 취지를 반대해석하면, 구 지방세법의 '원시취득'에는 기존에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던 경우가 포함된다. 원고들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이 아니어서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안재훈

판사 허 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별지

목록

순번	원고	취득 부동산	경락대금완납일 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일	피고	경정청구일	거부처분일
1	A	[redacted]시 [redacted]구 M건물 N호, O호 내지 P호	2015. 11. 27.	[redacted]시장	2018. 7. 5.	2018. 8. 27.
2	B	[redacted]시 [redacted]구 Q건물 제1층 R호	2015. 2. 1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8. 7. 2.	2018. 8. 29.
3	C	① [redacted]시 S 임야 273㎡, ② T 창고용지 309㎡, ③ [redacted]시 U, V 각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2층 창고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층 소매점 480.65㎡, 1층 창고 199.18㎡, 2층 창고 679.83㎡, ④ W 창고용지 3,101㎡, ⑤ X 도로 93㎡, ⑥ Y 도로 76㎡	2013. 7. 25.	[redacted]시장	2018. 6. 28.	2018. 8. 16.
4	D	① [redacted] [redacted]군 Z 임야 22,711㎡, ② AA 임야 460㎡, ③ AB 전 883㎡, ④ AC 임야 737㎡ 중 각 1/2 지분	2015. 10. 26.	[redacted]군수	2018. 8. 20.	2018. 8. 21.
5	E	[redacted]시 [redacted]구 AD건물 AE호 내지 AF호	2013. 9. 1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8. 7. 16.	2018. 9. 10.
6	F	[redacted]시 [redacted]구 AG건물 제10층 AH호 내지 AI호	2016. 4. 2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8. 7. 31.	2018. 9. 17.
7	G	[redacted]시 [redacted]구 AJ 공장용지 1,653㎡, 위 지상 철골조 미네랄울판넬 경사지붕 단층공장 1,017.07㎡	2014. 7. 16.	[redacted]시장	2018. 6. 26.	2018. 8. 1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8	H	[redacted]시 AK 임야 786㎡, AL 임야 813㎡	2016. 12. 2.	[redacted]시송탄출장소장	2018. 11. 12.	2018. 12. 24.
9	주식회사 I	① [redacted]군 AM 임야 408㎡, ② AN 임야 540㎡, ③ AO 임야 630㎡, ④ AP 임야 416㎡, ⑤ AQ 임야 432㎡, ⑥ AR 임야 673㎡, ⑦ AS 임야 546㎡, ⑧ AT 임야 415㎡, ⑨ AU 임야 454㎡, ⑩ AV 임야 824㎡, ⑪ AW 임야 827㎡, ⑫ AX 임야 482㎡, ⑬ AY 임야 433㎡, ⑭ AZ 임야 2,006㎡, ⑮ BA 전 137㎡	2016. 2. 2.	[redacted]군수	2018. 7. 29.	2018. 8. 1.
10	J	[redacted]시 BB건물 제1층 N호	2015. 5. 27.	[redacted]시장	2018. 6. 29.	2018. 8. 27.
11	K	[redacted]시 [redacted]구 BC 제1층 BD호 내지 BE호, BF호 내지 BG호, BH호 내지 BI호	2013. 12. 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8. 7. 9.	2018. 8. 27.
		[redacted]시 BJ외 1필지 BK건물 BL호	2014. 4. 28.	[redacted]시장	2018. 7. 4.	2018. 8. 27.
12	L	① [redacted]시 BM 공장용지 1,675㎡, ②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87㎡, ③ 화성시 BN 공장용지 1,678㎡, ④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93㎡, ⑤ 화성시 BO 공장용지 1,678㎡, ⑥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93.2㎡, ⑦ 화성시 BP 임야 661㎡ 중 165/661 지분, ⑧ BQ 도로 161	2015. 12. 9.	[redacted]시장	2018. 7. 9.	2018. 8. 2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 중 1/3 지분, ⑨ BR 도로 43㎡ 중 1/3 지분, ⑩ BS 도로 87㎡ 중 1/3 지분, ⑪ BT 도로 701㎡ 중 147/701 지분, ⑫ BU 도로 441㎡ 중 1/3 지분				

끝.